

해고고대

노트북이 빗물에 젖었다면

저는 평소 대학원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대학원도서관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학원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비가 세차게 오는 날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책상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노트북 키보드에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와서 저는 얼른 키보드를 털고 집에 가서 헤어 드라이기로 말려보았지만 노트북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가 이를 책임지고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학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제완 법학전문대학원·자유전공학부장

건물에 비가 새서 손해를 일으킨 경우,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와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모두 가해자의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합니다. 이에 비하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직접적인 행위자 내지 가해자가 따로 없이 그 소유자 내지 점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불법행위나 계약위반과는 다르며,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무과실책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상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건물의 점유자인 학교법인이 건물의 관리를 잘못해서 비가 세차게 내리치는데도 창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샌 경우라면, 이는 건물을 제대로 보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건물 설치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천장의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건물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건물의 점유자인 학교로서 책임을 면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밝혀야 합니다. 첫째, 천장에서 물이 샌 것이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가 개입하여 발생하였거나 (예컨대 비와 무관하게 위층 화장실을 누수가 깨뜨려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건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발생 (예컨대 필요한 설치 보존상의 조치를 다

취한 제대로 된 건물임에도 비락을 맞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한 것임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 민법 제758조 규정 단서와 같이 점유자인 학교로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주위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학교법인이 건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유사한 무과실책임제도로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데, 민법 제759조에서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가 국공립일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적용되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단횡단

마음만은 훨훨

프랑스의 한 소설가가 새 작품을 계약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집에 갇힌 채 소설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나 자기 생애 최고의 작품을 썼다고 생각한 소설가는 편집장을 찾아갔다. 감시라도 하듯 그를 재촉하던 편집장은 기쁜 마음에 원고를 읽기 시작했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했다. “높고 파란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훨훨, 훨훨” 그런데 다음 장도 “훨훨” 그다음 장도 “훨훨”밖에 없었다. 당연히 편집장은 무슨 작품이 이러냐고 물어보자 소설가가 말했다.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그 하늘을 날아가려면 그거로도 모자라지 않아요?”

언론사 인턴을 하고 있는 선배에게 한밤중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잘 지내느냐며 근황을 묻다가 이내 고민이 있다며 운을 떼기 시작했다. 처음에 인턴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집과 학교를 반복하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무기력하다 못해 잉여롭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신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과 공부에 발목이 잡혀 나는 어디 있는지 안보이고 이도 저도 아닌 그 사이에 파묻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잉여로운 삶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며 뭐가 더 자기한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우리는 항상 자유에 목말라 한다. 그러나 한 번 자유를 맞으면 또 다른 자유를 갈망하게 되고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선배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시험이 끝나기만을 고대하는 수험생이 생각났다. 빨리 자유를 얻고 싶어 시험이 끝나기만을 바라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만큼 찾아오지 않는 그런 기분. 몸과 마음 두 가지가 다 자유로운 진정한 자유는 죽기 전까지 없다. 그러나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반대로 마음이라도 좀 더 자유롭게 새처럼 훨훨 날아 보는 건 어떨까.

김연광 기자

기사제보·투고문의 010-5295-1683

대학생에 ‘장학금 족쇄’ 채우지 말라

석탑 MRI

서진욱

머니투데이 교육팀 기자

지난 21일 비정규직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 ‘직장의 신’이 막을 내렸다. 이 드라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세태를 풍자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대다수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목을 맨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라마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직장의 신’ 종영을 한 주 앞둔 1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희망사다리장학금’으로 명명된 이번 지원방안은 현장실습을 이수한 뒤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학 3·4학년, 전문대 2학년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름마저 긍정적인 희

망사다리장학금은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장학금은 수혜학생들에게 졸업 후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장학금 수혜 횟수×6개월)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전액이 환수 조치된다. 하지만 인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혹사당하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혜학생이 의무근무 기간을 채운 뒤 직장을 옮길 경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에 가깝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직장의 선택권을 보유한 개인을 지원한 뒤 일정 기간동안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의무근무 조건은 ‘장학금 족쇄’일 뿐이다.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을, 중소기업은 인재 부족을 호소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현실과 입장을 따로 떼어놓은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미스김(‘직장의 신’의 주인공)에게 정규직은 매력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도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근무여건 격차를 줄인다면 현재의 안정보다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택하는 청년들은 늘어날 것이다.

나의 한 컷



고강규 교내 구둑방 운영자

1975년도 휴교령이 내려졌을 때 정문의 모습이다. 학교에 들어오려면 정문을 지키고 있는 수위에게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구둑방의 위치도 계속 변했는데 당시에는 본관 앞에 있었다.

정리 김연광 기자

KU시네마트랩 상영시간안내 5월 27일(월) - 6월 2일(일)

5/27(월)	5/28(화)	5/29(수)	5/30(목)	5/31(금)	6/1(토)	6/2(일)
환상속의그대 11:30	라자르선생님 11:30	로마위드러브 11:30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13:00	환상속의 그대 11:30	주말의명화-대부1(1972) 11:30	잠 못 드는 밤 11:30
지슬 13:40	월 플라워 13:40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13:20	라운드업 15:00	월 플라워 13:30	주말의명화-대부2(1974) 15:00	레옹 12:50
환상속의 그대 15:40	라운드업 15:20	레옹 15:20	레옹 15:40	로마위드러브 15:40		월 플라워 15:20
지슬 17:50	레옹 17:40	잠 못 드는 밤(개봉) 18:10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17:50	비포 미드나잇(개봉) 19:30		비포 미드나잇 17:20
환상속의 그대 19:50	더 헌트 20:10		라자르 선생님 19:30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19:30

문의 | KU시네마트랩 T 924-6579

KU시네마트랩 화제작



비엔나로 향하는 유럽 횡단 열차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던 제시와 셀린느, 6개월 후 다시 만나는 약속은 9년이 지나서야 이뤄진다. 그것도 다시 우연한 만남으로. 이제는 우연이라는 말보다 운명이라는 말을 받게 된 그들. 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우연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제시와 셀린느는 다시 한 번 그리스에서 재회한다. 다시 열차에서 자신을 만나도 인사를 건네겠다는 셀린느의 물음에 당연하다고 말하는 제시,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우연일까, 아니면 계속되는 운명일까.

Like ME!
/kuweekly2

